

의안번호	제924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성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4
----------	-----

발의연월일: 2025년 월 일

발 의 자: 김성대·이정범·유상용
김정일·박병천·박봉순
박진희 의원

1. 개정이유

-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의 행사 추진 및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면제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 각급학교 추가
- 국가 및 지자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 면제 신설

나. 수영장 철거에 따른 관리기관 및 사용료 삭제(안 제6조제2항, 별표 6)

- 수영장 관리기관 삭제
- [별표 6] 학생, 일반의 징수금액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중원교
육문화원 및 제천학생회관”을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및 충청북도중원교육문
화원”으로 한다.

별표 6 중 수영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직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생략) 2. <u>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u> 3.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 직속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충청북도학생수련원,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및 제천학생회관</u> 수영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한다. 1. ~ 6. (생략)	제6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u> ----- -- 3. ~ 5. (현행과 같음) 6.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난구조훈련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 <u>충청북도학생수련원 및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u> ----- ----- ----. 1. ~ 6. (현행과 같음)

[별표 6] 제천학생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제4조제2항 관련)

현행					개정안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기관명	사 용 구 분			징 수 액	비 고
제천 학생 회관	수영장	학생	개인	500원	○ 사용료는 1인 기준임 ○ 학생 : 19세미만 또는 고등학생 이하 ○ 단체는 30인 이상 적용	제천 학생 회관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단체	400원				A4-B5		30원	"
		일반	개인	1,000원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흑백	A3-B4	80원	"
			단체	800원					A4-B5	50원	"
	복사료	A3-B4		40원	1매당	칼라	A4-B5		500원	"	
		A4-B5		30원	"		A4-B5		500원	"	
	인쇄료 (디지털 자료실)	흑백	A3-B4	80원	"	칼라	A4-B5		500원	"	
			A4-B5	50원	"		A4-B5		500원	"	
		칼라	A4-B5	500원	"		A4-B5		500원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며,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국 재정복지과장 박종한